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, 평가 대상이 되는 유치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2 중 “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”이란 국립·공립 유치원과”를 “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”이란”으로, “이상인”을 “미만인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7제1항 중 “국립·공립 유치원”을 “유치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홈페이지 등을”을 “홈페이지(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)를”로 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위반사실의 공표 관련) ① 관할청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대상 유치원에 공표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- ② 관할청은 유치원으로부터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, 해당 유치원이 공표 대상인지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.

- ③ 관할청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, 3년 간 관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하며, 공시관련 홈페이지

에도 공표할 수 있다.

④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해당 유치원의 명칭(처분을 받고 유치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명칭을 모두 공표한다)
2. 해당 유치원의 주소
3. 위반 사실이 있었던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 및 원장과 공표 당시 설립자 및 원장의 동일인 여부
4. 관할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육감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2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.

③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청이 유치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평가의 절차 등) ① ~ ④ (생략) <u>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</u>	제22조(평가의 절차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, 평가 대상이 되는 유치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</u>
⑥ · ⑦ (생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2(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)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</u> ”이란 <u>국립·공립 유치원과</u>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.	제22조의2(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) ----- -----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</u> ”이란 ----- ----- <u>미만인</u> -----.
제22조의7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 ① <u>국립·공립 유치원</u> 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	제22조의7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 ① <u>유치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	② -----

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----- 홈페이지(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)를 ---
-.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35조의2(위반사실의 공표 관련)

① 관할청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대상 유치원에 공표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② 관할청은 유치원으로부터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, 해당 유치원이 공표 대상인지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관할청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, 3년 간 관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하며, 공시관련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.

④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해당 유치원의 명칭(처분을

	<u>받고 유치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명칭을 모두 공표한다)</u> <u>2. 해당 유치원의 주소</u> <u>3. 위반 사실이 있었던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 및 원장과 공표 당시 설립자 및 원장의 동일인 여부</u> <u>4. 관할청</u>
--	---